

제37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제12대 총여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2000년 제37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제12대 총여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기초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본 시행세칙에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중선관위에서 판단하여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장 선거권자

선거권자는 1999년 10월중에 확인된 연세대학교 학부재학생으로 한다.

제2장 입후보자 자격 및 구비서류

제1조 입후보자 자격

- 가. 6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단, 복학생은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나. 연세인 6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총여학생회는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 입후보자 구비서류

- 가. 입후보자 등록원서
나. 추천인 서명서
다. 후보자 소견서 (A4 용지 1장)
라. 재학증명서
마. 흑백 사진 3매 (8*10)와 원본필름 1매
바.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사. 선거운동본부 전원의 명단 (직책 명시)
아. 정책자료집 편집 완료된 필름 1부 (총여학생회는 구비할 필요가 없다)
자. 중선관위 포스터용 정책 1부 (디스켓)

◆규제사항

1. 위의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을 취소시킨다. (정책자료집의 경우는 제7장 제1조 다항에 의거함)
2. 마감시간 (18시 10분)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는다.
3. 선관위의 실수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21시까지 통보하여 미비서류를 완비하여 익일 18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기호

기호사용은 하지 않으며, 모든 선전물과 포스터, 투표용지에는 으뜸구호와 후보이름만을 기재한다.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중선관위)

제1조 구성

재학생 (선거 당해년도 10월 현재)중에서 중앙운영위원회(이하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과 위원 3인까지 총 4인을 중선관위로 하고 2인 이상의 집행부를 둔다.

제2조 회의 운영

가. 선거 공고일 다음날부터 회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중선관위원과 각 후보 선거본부장이 참여한다.

제3조 역할

- 가. 중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다.
나. 중선관위는 선거의 진행과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 중선관위는 제적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중선관위는 컴퓨터 통신 하이텔, 나우누리 안에 있는 연세대학교 동호회에 선거 관련 방을 운영한다.
2) 선거 관련방의 내용은 학우들의 의견개진과 각 선본 정책 자료집, 입장 등으로 한다. 단,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은 중선관위의 심의를 통해 삭제한다.
라. 다음의 사항은 중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중운위로 이월한다.
1) 후보 자격 박탈
2) 선거 무효
3) 선거 일정 재조정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장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단대 선관위)

제1조 구성

- 가. 단대 선관위원장은 재학생(선거 당해년도 10월 현재)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자를 단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선관위에서 임명한다.
나. 단대 선관위원은 재학생(선거 당해년도 10월 현재)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자를 단대선관위원장이 추천하여 중선관위에서 임명한다.

제2조 역할

- 가. 중선관위와 동일하며 단대 선관위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은 중선관위로 이월하여 결정한다.
나. 단대 선관위는 중선관위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중선관위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되는 사안을 그 단대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단대 선관위의 자격을 박탈하고 새 선관위원을 단대 선본의 합의하에 임명한다.

◆규제사항

- 가. 단대 선관위원은 11월 2일 18시까지 중선관위로 명단을 제출한다. 명단제출이 늦어질 경우 하루의 여유를 더 주고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 중선관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
나. 단대 선관위원 임명 결과는 11월 3일 15시 이전까지 단대에 통보해 준다.

제5장 참관인

제1조 자격

가. 각 후보자는 투표소 당 1인의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해당 단대 재학생을 원칙으로

제7장 유세 및 선전

유세는 개인 유세, 강의실 유세, 합동 유세, 정책토론회로 나뉘며 선거운동기간(입후보확정공고 11월 3일 06시)이후부터 투표전날 (11월 16일 18시까지)에만 한다.

제1조 개인유세

개인유세 선전물은 선본 게시판, 중형선전물, 인쇄매체, 입간판으로 제한하며, 아래 사항의 위반시 중선관위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제거할 수 있고 경고 조치하여 이를 선관위 명의로 공개한다. 선전물의 내용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사진, 그림, 글 등으로 한다. 지정장소는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선본 게시판과 중형 선전물의 도수는 3도로 제한한다. 단, 리플렛, 신문등의 인쇄매체는 모두 흑백으로 제작한다. 개인유세시 모든 앰프와 레코더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유세시 허용되는 소품은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가. 선본 게시판

1. 전용게시판은 (자보용지 *3) 의 크기로 하며 중앙도서관앞에 설치한다.
2. 내용중 선거 공약과 후보명 및 으뜸구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3. 전용게시판은 각 선본에서 꾸미고 중선관위에서 제공한다.
4. 선본 전용 게시판을 꾸미는 모든 색은 3도로 제한하며, 후보자의 사진이 들어갈 수 없다(프린터, 인쇄화지 모두 포함)
5. 설치는 11월 8일까지 중선관위 책임하에 설치한다.

나. 인쇄매체

1. 인쇄매체는 세종류로 한정한다. (신문, 리플렛, 자료집)
 - 부수는 신문과 리플렛을 합쳐서 15,000부 이하 (총여학생회는 5,000부 이하), 자료집은 5,000부 이하로 제한한다. 신문과 전단 을 합해 3종으로 제한한다.(총여학생회는 2 으로 제한한다.)
 - 배포되는 모든 인쇄매체에는 중선관위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하며, 부착되지 않은 인쇄매체는 전량 수거하며, 고의적으로 배포하였을 시에는 매체는 전량 수거하고 해당 선본에 경고 조치한다.

1) 신문

- 신문은 신문용지 전판으로 제한한다. 면수는 4면까지 할 수 있다.
- 반드시 흑백으로 하며 재질은 신문용지 이하로 한다.

2) 전단

- 리플렛의 크기는 A4 3매이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양은 제한이 없다.

(칼라인쇄는 금지한다.)

3) 자료집

- 분량은 70쪽이하로 하며 각 선본에서 제작하고, 중선관위가 합본으로 출판한다.
- 출판비는 중선관위가 총학생회 특별공동예산에서 부담하여, 나머지 금액은 각 선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자료집 필름 제출 마감일 : 11월 3일 오후 6시, 시간초과 : 경고 / 익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료집을 내지 못한다.

(단, 총여학생회는 총여 선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제작하되 부수는 2,000부 이하로 제한한다)

다. 중형선전물

중형선전물은 전지*2의 크기로 하며 2종으로 제한하며, 1종은 20장을 넘지 못한다.

다. 모든 선전물은 선관위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가 없는 선전물은 선관위가 제거하고 경고 조치한다. 모든 선전물은 11월 4일 06시부터 부착을 시작하여 11월 16일 18시에 반드시 제거한다.

마. 언론

1. 방송유세는 금하며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학내 언론 매체의 보도를 허용한다. 학내 언론매체는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하여 논평할 수 있다. 단, 후보자 신상에 대한 비방 이나 공약,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
2. 선거 관련 학내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은 선관위와 각 선본의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입간판

1. 각 선본에서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일부터 학교 정문 앞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크기는 전지3*3의 크기이며 전지의 방향은 그림과 같이 한다. □ 색도는 3도를 넘지 못하며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제2조 합동유세 (1차 : 11월 9일, 2차(정책토론회) : 11월 12일, 3차, 11월 16일, 13시 민주광장) 단 우천시에는 선본회의를 통해 장소나 일정을 변경한다.

가. 합동 유세 순서는 등록 이후 일괄적으로 추첨에 의해 순서를 결정한다. 단, 유세 시작 10분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합동 유세 시간은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한 선본의 유세시간을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유세마다 5분을 초과하면 경고조치를 한다.

다. 합동유세시 현수막, 피켓은 사용할 수 없다.

라. 합동유세시간동안 합동유세를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

마. 각 선본은 자신의 유세시간에만 인쇄물을 유세장에서 배포할 수 있으며 그의 다른 선본은 배포할 수 없다.

사. 정책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각 선본 정,부후보와 패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총여학생회 정책 토론회는 총여 선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아. 총여학생회 후보 유세를 총학생회 후보 유세보다 먼저 실시한다.

자. 합동유세 전체의 일정은 중선관위에서 관리, 진행한다.

제8장 투표

제1조 기간

투표는 1999년 11월 17, 18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단 18시까지 줄을 선 경우는 투표할 수 있다.)

제2조 투표구 지정

투표구는 각 대학별 1개구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구당 투표함은 1개로 한다. (단, 문과대, 상경대, 사회대, 생활과학대, 교육과학대, 공과대는 2개구로 할 수 있다.)

제3조 투표구 선전물

투표구에는 투표용지 사용법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지한다.

(단, 중선관위가 작성한 포스터는 반드시 부착한다.)

한다. 단, 당대 실정에 따라 당대 선거 참관인과 중앙 선거 참관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나. 참관인은 현 학생회 간부나 중앙, 당대 선거본부 성원이 할 수 있다.

다. 1인이 계속해서 참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타인이 명찰을 달고 대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라. 각 후보자는 11월 16일 18시까지 참관인 명단과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학생증, 도서관대출증, 등록금 영수증)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본을 제출한다.

제2조 역할

가.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상황을 감독, 참관한다.

나. 진행상황에 대한 이의를 당대 및 중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규제조건

가. 참관인은 투표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 참관인이 투표구 내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당대 선관위원장과 다른 후보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할 시에 각 후보 선거 본부의 합의를 거쳐 중선관위원장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참관인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 및 당대 선관위에서 발부한 명찰을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단, 명찰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참관인 본인의 서명을 기입한다)

라.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2.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후보를 선전하는 언동이나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기타 당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4조 기타사항

가. 해당 대학 선거구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해당 대학 선관위와 상대 후보자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참관인은 투표 진행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다. (단, 해당 대학 선관위원장의 허가하에 1시간 이내 가능)

다. 참관인은 투표 당일 08:30까지 중선관위실에서 당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을 운반하고 투표기간동안 투표함을 관리한다.

라.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대학 선관위원장의 입회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한다. 단, 합의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중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1조 정의

선거 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게 하거나 당선을 얻는 행위다. 단, 추천인 서명활동은 선거 운동이 아니다.

제2조 구성

선거 운동은 강의실 유세, 대중유세, 정책, 공약선전, 선거운동원들의 활동, 후보들의 사람 만나기, 학내 언론에의 보도, 학내의 각 모임과 단체 방문 및 간담회로 이루어진다.

제3조 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 확정공고(11월 3일 06시) 이후부터 투표전날(11월 16일 18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오후3시부터 월요일 아침6시까지의 pc통신을 포함한 선본 명의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제4조 추천인 서명

가. 추천인 서명을 받기 위해 후보자 및 선거본부원들이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서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나. 연서판은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 이름, 출마의 변, 으뜸구호 및 기치, 선거 본부의 표시, 서명용지 (중선관위에서 작성배포한 것)으로 구성한다.

다. 서명용지에는 각 연서판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되 일련번호 묶음이 5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연서판은 후보자 등록시에 함께 제출하며 51개 이상 작성했을 시에는 1회의 경고를 준다.

마. 모든 연서판에는 중선관위 명의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만 한다.

제5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 및 당대 선관위원

나. 학생회 공식 지위에 있는 자

- 중앙운영위원 및 총학생회 집행부 전원과 당대 학생회 운영위원 및 집행부 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학생회 공식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연서 시작일(11월 1일 09시)부로 사퇴했을 때만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학생회 및 언론기관의 선거 운동 금지

가.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당대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와 각 과 학생회, 여학생회 및 언론출판협의회에 소속된 모든 언론 단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비방, 선거에 관한 의사 개진을 할 수 없다. 선거에 대한 의사를 개진하려면 중선관위를 통해서만 한다.

나. 학생회나 언론기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본은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각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중선관위에서 심의하여 해당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선거 예산

각 선본은 모든 선거 예산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11월 16일 15시부터 18일 18시까지 중앙도서관 앞의 각 선본 게시판에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설문조사, 서명운동

선거 운동기간 중에 선거 본부 명의로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하는 경우 중선관위에서 각 선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승인 한다.

제9조 기타 사항

이외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중선관위에서 논의한다.

제4조 투표자 확인

투표권자에 대한 확인은 각 단대 명부 확인으로 한다. 두 번 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후보자를 경고조치 하거나 자격을 박탈한다.

제5조 투표소

가. 출구와 입구는 투표인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해당 투표구 참관인, 선관위원, 중선관위원은 가능하다.)
나. 해당대학 선관위원과 참관인은 해당 투표소에 상주해야 한다.

제6조 투표절차

가. 선거권자는 자신이 속한 대학 투표소에서 한다.
나. 투표자는 소정의 증명서 (학생증, 도서대출증, 대학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선관위원의 명부확인 후 투표용지에 참관인 확인을 받은 뒤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단, 증명서가 없을 경우 명부가 확인되면 선관위의 재량으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후 투표한다.

제7조 투표함의 봉합 및 보관

가. 선관위원은 투표 종료후 참관인의 참석하에 참관인과 선관위의 서명으로 봉인한다
나.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는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다. 11월 18일 18시부터 19일 08시까지, 19일 18시부터 20일 08시까지 투표함을 중선관위와 각 참관인 1인의 참여하에 중선관위실에 보관한다.

제8조 투표함 송부

투표가 끝난 직후 지체없이 투표함을 봉인한후 선관위와 참관인의 관리하에 중선관위실로 옮긴다.

제9장 개표

제1조 개표시작, 순서

개표는 총여, 총학 순으로 하며, 투표함의 완전 도착 후 선관위 및 개표 참관인의 참석후 봉인에 이상이 없을 때, 코드번호 역순으로 개표하기 시작한다. (단, 다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는 단대 선관위와 참관인의 입회하에 중앙 투표함에 넣고, 단대 개표후에 중앙투표함에서 단대 투표용지가 나오면 단대, 중선관위의 심의 결정에 따라 개표 결과에 포함한다.)

제2조 무효표

투표자의 의사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무효표로 인정된다.

제3조 개표일

가. 단대 선거는 당일날 개표하고 총여 및 총학 선거는 11월 19일에 단대 선거 개표와 투표를 집계후 개표를 시작한다.
나. 장소는 중선관위에서 지정한 곳에서 실시한다.

제10장 선거무효

제1조 재투표

1,2위의 표차보다 무효표가 많은 경우, 1·2위간의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2조 재선거

가. 오차가 5%이상인 경우
나. 하루연장이후에도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는 경우

제3조 투표기간 연장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마지막날 투표시간 또는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1장 후보자격의 박탈 및 경고 조치

제1조 후보자격 박탈

가. 입후보자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나 마감 10분이 지나도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후보 등록을 취소시킨다. 단, 중선관위의 실수로 미비서류를 접수한 것이 발견될 시 익일 18시까지 보충하여 등록할 수 있다.
나. 3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다. 중선관위의 조치에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조 경고조치

가. 시정해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선관위의 판단으로 경고조치한다.
나. 중앙 및 단대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다. 기타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경고장은 중형선전물을 부착하는 곳과 중앙도서관 앞, 그리고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A4용지로 익일 08시부터 나흘 동안부착한다.

제12장 당선 공고 및 이의 제기

제1조 당선공고

중선관위는 개표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제2조 이의제기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11월 26일 18시까지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중선관위의 해산

다른 후보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고, 제반 선거 실무를 마쳤을 경우, 11월 26일에 당선을 확정하고 해산한다.